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70
----------	-------

발의연월일 : 2017. 11. 15.

발의자 : 조정식 · 박정 · 신창현

원혜영 · 김재경 · 정동영

윤관석 · 김종대 · 김철민

임종성 · 최인호 · 이우현

이학재 · 박덕흠 · 전현희

안호영 · 민홍철 · 김현아

의원(18인)

### 제안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대형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깨닫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과 아울러 센서, 로봇 검사 등 유지관리 기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낙후된 유지관리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5년 주기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최소유지관리기준

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 나.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안 제9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1조).
- 라.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의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 기획단을 둠(안 제18조).

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조사·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은 관리·운영 수익금,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24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 보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정비,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및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성능 및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소요 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할 것

2.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유발할 것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체계적인 관리

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제1호 외의 관리주체: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

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의하여 관리계획의 적정성, 투자의 시급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 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반시설이 시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 한다)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을 설정·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포함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공통기준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을 설정·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공통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

시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2.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3.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4. 제13조의 성능개선기준과의 비교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체가 조사의 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주기 ·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 지원 비율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
2. 기반시설 조사·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
4. 기반시설 자산가치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방안
6.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 관리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관리계획의 심의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을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와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 · 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전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1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건설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

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3.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보강
4.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

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시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6조(관리감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게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